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 도 자 료 배 포 즉시			
배 포 일		2020. 8. 10. / (총 30매)			
보건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과 장	설 예 승	전 화	044-202-3051
		총 괄	신 태 환		044-202-3052
		기준중위소득	강 태 수		044-202-3054
		실태조사	김 희 선		044-202-3056
		제도사례	고 석		044-202-3061
		긴급복지	최 종 천		044-202-3058
	자립 지원과	과 장	최 종 희		044-202-3070
		담 당 자	김 혜 지		044-202-3073
	기초의료 보장과	과 장	이 영 재		044-202-3090
		담 당 자	이 원 의		044-202-3094
국 토 교 통 부	주거복지 정책과	과 장	김 석 기		044-201-4504
		담 당 자	김 대 영		044-201-3358
교 육 부	교육복지 정책과	과 장	장 미 란		044-203-6526
		담 당 자	신 동 진		044-203-6521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 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 * (총 수급자) '13년 135만 명 → '15년 165만 명 → '17년 158만 명 → '19년 188만 명 → '20.6월 203만 명
 -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 '16.6월 40.1만 원 → '20.6월 42.7만 원
-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 주요 기대효과(~'23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 '23. 57.6만 원 이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 (73만 명) 하며,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
(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원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제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급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 한다.
-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행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6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1.447

* 출처 :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보사연, 201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

구분	기존 최저교육비	최저교육비 재정의
개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항목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 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 시킨 2개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

구분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정책대상별 인센티브(선택)
(가칭) 희망저축계좌 II	1:3 (정률)	심화사례 관리	+ 민간매칭금 자활기금 지자체 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중앙자산키움펀드 ⋮
(가칭) 희망저축계좌 I		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랬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참고 1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 참고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참고 3 > 제2차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

< 참고 4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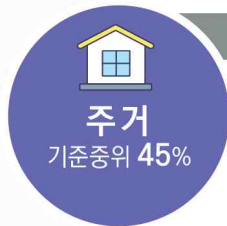
- 별첨 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안) 요약
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안)

참고 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지원기준 개선으로 긴급복지 대상 지속 확대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 원, 사망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수급자 수) 2020년 6월 기준 203만 명

* 생계급여 127만 명, 의료급여 142만 명, 주거급여 184만 명, 교육급여 29만 명

□ (예산)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3.6조 원(국비 기준)

* 생계 4.3조 원, 주거 1.6조 원, 의료 7.0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5조 원, 해산장제 315억 원

참고 3 제2차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수급가구 사례 < 출처 : 지자체 현장 민원 >

< 현재 >

- 올해 80세의 A할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어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 원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 '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할머니의 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1년)

□ 한부모 수급가구 사례 < 출처 : 지자체 현장 민원 >

< 현재 >

- 경기도 거주 중인 35세 B씨는 4세 자녀와 2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아동양육비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주거급여 25만 원을 수급중이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은 일년에 서너차례 몇십만원 정도 수준으로, 소득활동을 계획해 보지만 아이양육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았으나, 자녀의 부양의무자인父의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 '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씨와 자녀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1년)

2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 (1-2인 가구)

< 출처 : KBS '생계급여 50만 원... 끊기 힘든 빈곤 악순환', 2018.05.16. >

< 현재 >

- 서울시 쪽방촌에 사는 64세 A씨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봉사단체에서 해결, 나머지 끼니는 쌀과 잡곡만으로 지어 먹는다. A씨는 한 달에 5만8000원의 식비를 쓴다. 부실한 식사는 병으로 이어져 치료비 부담까지 들게 됐다. 병이 생겨 일을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기초생활 수급비가 소득의 전부인 A씨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소원이다. 기초 수급자 32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해 보니 한달 평균 적자가 17만3000원이었다.

< 개선 사례 >

- 2020년 현재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52만7000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과 가구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2026년 예정)되면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62만9000원까지(약 19.2% 인상) 인상될 전망이다
 - * 2018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 출처 :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 >

< 현재 >

-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59세)는 지난 5년 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A씨는 퇴원을 희망함에도, 오랜 병원생활로 인해 주거지가 없어,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개선 사례 >

- A씨는 퇴원 후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및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케어안심주택에서 제공하는 건강체조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인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A씨의 건강상태도 호전되었다. 퇴원 후 이용하는 협력의료기관에서는 검진을 통해 A씨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A씨는 재가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4

의료급여 이용절차 합리적 개선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

< 현재 >

- 대구에 사는 B씨는 당뇨·고혈압 질환을 보유하여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다.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상한기준은 입원·외래·투약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 적용되나, A씨는 투약일수만으로 연간 365일을 사용하고 있다. A씨는 다른 질환으로 외래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 개선 사례 >

- 투약일수만으로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상한 일수를 재조정*하여, 추가적인 질환 발병으로 의료 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일수 상한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

* (예시) 현행 365일 → 380일로 변경하여, 연장승인 없이도 추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5

자활지원체계 확대 · 개선

□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 <출처: 자활사업 현장 종사자 간담회>

< 현재 >

- 50대 중반인 A씨는 몇 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얻은 허리 부상으로 인해 일터로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 근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우울함이 계속되어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몇 번 다툼도 있었다. 여전히 통증으로 인해 강도 높은 노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자활사업 참여기한이 끝나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래저래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황이다.

< 개선 사례 >

- 당장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활을 위한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자활준비형'으로 분류하여,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근로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내작업 위주 작업단 배치
-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알콜 의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독사례 관리 등 전문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한편, 자활 사업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대상 집단상담과 갈등관리 제공

□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 · 성장 지원강화 <출처: 현장 민원>

< 현재 >

- D씨는 주거복지(집수리) 자활기업을 창업했다. 시도 단위의 다양한 주거 공공사업(수선유지급여 사업, 커뮤니티 케어, 그린뉴딜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자활기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중이다.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면허도 취득하려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광역자활기업을 만들기 위해 모인 지역자활기업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사례 >

- '21년부터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B씨는 광역자활기업을 설립하면서 사업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 지원을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됨

□ 자활사업단의 자활기업 연계 확대 <출처 : 지역자활센터 현장 민원 >

< 현재 >

- 00도의 모 자활사업단에 근무하는 B씨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취직을 준비하려고 한다. 지금은 청소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력 수요가 높아진 소독·방역 업무에 요즘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강00씨 지역의 자활사업단 중에서는 소독·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이 없어 이동이 어렵다고 한다.
- 00도의 소독방역 자활기업 C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서비스 요청이 많았으나 인력부족과 방역 물품 가격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방역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단가를 지나치게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인턴 등을 활용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 자활근로 사업단을 인턴십이나 위탁운영 형식으로 자활기업과 연계하여, 자활 참여자에게는 자활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쌓고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기업에는 인력 풀을 지원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출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연구 면접조사>

< 현재 >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E씨는 평소 자산관리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모으는 돈 없이 모두 소비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목돈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에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 절반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교육비로 쓸 예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의 대학입학이나 결혼 등에 대비한 목돈 마련에 활용하고 싶다. 그러나 평소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3년 만기 이후 쌓인 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추가로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 개선 사례 >

- '21.1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청년에게 종합재무설계서비스 등 특화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E씨는 금융 관련 전문가에게 재무상담(1:1재무상태진단, 개선 방안 수립 등) 및 이행여부 점검 등 경제관련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6

저소득층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출처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대학생 상담사례(국토연구원) >

< 현재 >

-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청년 A씨(20)는 2019년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과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현재 가장 힘든 점이 월세비 마련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면 더욱 학업에 열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선 사례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사례와 같은 경우 3급지(광역시) 3인가구로 인정하여 임차급여 25만4000원을 아버지에게 일괄 지급하였으나,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도입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아버지에게는 3급지 2인가구(할머니 포함)로 인정하여 21만2000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인천에 거주하는 A씨에게는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로 인정하여 23만9000원의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7

교육급여 통합 지원

< 출처 : 20년 제2차 교육급여소위, 민원 등. >

< 현재 >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교육급여 지원 항목(학용품비, 부교재비)은 학교급에 따른 교육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면 수업을 전제로 설계된 교육급여 항목은 코로나19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학습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시·도교육청별 실시하는 교육비 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과 지원항목이 달라 지역별·항목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 교육활동지원비 통합지원으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 수준 강화('21년, 전년대비 초38.8%, 중27.5%, 고6.1%증가)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지역의 A학생은 EBS교육 방송 시청을 위해 스마트기기, 인터넷비, EBS 교재가 필요하나 ○○교육청은 저소득층의 인터넷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 B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활용하여 학습을 위한 기기와 교재를 구입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 4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

□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율 감소 효과

- 빈곤율이란 전체인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전체 인구 중 빈곤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 빈곤율 감소효과는 통상 시장소득을 빈곤선으로 한 빈곤율과 예를 들면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더한 소득의 빈곤율의 차를 시장 소득빈곤율로 나눈 비율로 해당 비율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임

$$* \text{빈곤율 감소효과} = (\text{시장소득 빈곤율} - \text{해당 소득범주의 빈곤율}) / \text{시장소득 빈곤율} \times 100$$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보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을 말함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 가구균등화지수

-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지출수준을 도출
- 예를 들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OECD 균등화 지수는 1인가구가 1일 경우 성인 1명 추가시 0.7, 아동 1명 추가시 0.5를 더함.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
 -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 증가

< 의료급여 >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이하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대상, 외래는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2천만원 이상은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연장승인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이 의료급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해 필요시 승인하는 제도

* 중증·희귀난치성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90일 연장(1회)
그 외 기타 질환 : 기타 질환 합산하여, 총 180일 연장(90일씩 연장 2회 가능)

□ 선택병의원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 연장해주는 제도(조건부 연장 승인)*

* 단, 특정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및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급여일수 초과 전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 가능(자발적 참여)

< 주거급여 >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 구조, 성능, 환경 기준(국토부 고시)

* (주거면적기준)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등

□ 기준임대료

-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 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지원 중

< '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6.6	22.5	17.9	15.8
2인	30.2	25.2	19.8	17.4
3인	35.9	30.2	23.6	20.9
4인	41.5	35.1	27.4	23.9
5인	42.9	36.5	28.5	24.9
6인	50.4	43.0	33.1	29.1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21년 4인가구 기준 243만8145원)의 초·중·고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 최저교육비

-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수급 자격자(교육급여,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법적성격	권리성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초·중등교육법)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자율(통상 기준중위소득 50~60% 이하)
지원 항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급식비, PC, 인터넷 등 (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지원항목, 금액은 시·도교육청별 차이 존재

< 자활급여 >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조건불이행 시 본인의 생계급여 삭감

□ 자활기업

- 자활근로참여자가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1/3이상(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일 때 자활기업으로 인정

□ 자활인프라

- 자활근로·자산형성 지원사업·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교육상담 등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1개소), 광역자활센터(15개소), 지역자활센터(250개소) 운영 중

□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교육·주거·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